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47
----------	-------

발의연월일 : 2026. 4. 27.

발 의 자 : 박민규 · 이학영 · 양부남
김태년 · 염태영 · 박지원
서영석 · 정태호 · 조승래
정진욱 · 김영진 · 김주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자산 매각 절차의 적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매각 대상 선정 및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사전 심의와 국회의 관리·감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자산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 절하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3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 자산

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표함으로써 공공기관 자산의 매각 과정 전반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감독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신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자산매각) ① 공공기관은 매각 예정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매각 예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각계획을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자산이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인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거나 동의를 받은 매각 예정가격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승인, 보고 및 동의를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자산 정보공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자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자산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및 공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 매각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매각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4조의2(자산매각) ① 공공기관</u> <u>은 매각 예정가격이 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산</u> <u>을 매각하려는 경우 주무기관</u> <u>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p> <p><u>② 공공기관은 매각 예정가격</u> <u>이 3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u> <u>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u> <u>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국무회</u> <u>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u> <u>회에 매각계획을 사전에 보고</u> <u>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u> <u>른 자산이 공공기관이 발행한</u> <u>지분증권인 경우 국무회의를</u> <u>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u> <u>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u></p> <p><u>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u> <u>승인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u> <u>보고를 하거나 동의를 받은 매</u> <u>각 예정가격을 감액하고자 하</u> <u>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u> <u>을 얻어야 한다.</u></p> <p><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u></p>

<신 설>

른 승인, 보고 및 동의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자산 정보공개) ① 재정경제부장은 공공기관의 자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자산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및 공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